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

(시설급여)



표준약관 제10068호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사자				
이용자 (갑)	성 명	(인)	등 급 (인정번호)	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 소			
	기 타	☐ 일반 ☐ 50%경감대상자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대한연세요양원	시설종류	
	시설장 성명	대한연세요양원장	연락처	02-426-1000
	주 소	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421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(인)	관 계	'갑'의 ()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 이동전화)
	주 소			

제1조 【 목 적 】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'을'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 (또는 '병'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'갑' (또는 '병')은 이후 15일 이내에 '을'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'갑' (또는 '병'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
⑥ '갑' (또는 '병'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

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

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 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- ① '갑'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2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전월 말일 납부하기로 한다.(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.)
- ② '갑' (또는 '병'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우리은행 _____로 한다.
- ④ '갑' 또는 '병'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'갑' 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
◇ 시설급여 (1월)

구 분		1등급	2등급	3등급
요 양 급 여	노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	90,450	83,910	79,240
	노인요양시설(단기보호에서 전환)			
	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			
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		
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		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6,700원		
	식재료비(1식)	3,500원		
	간식비(1회)	500원		
	이/미용료등	10,000원		

*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「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른다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구분	시설급여	재가급여
일반	20%	15%
기초수급권자	0%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	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하위년차성, 민생질환자)	12%	7.5%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8%	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◇ 세부내역(30일 기준)

구분		금액(원)	내역
총계			
요양보험 부담비용	소계		
	요양급여비용(80%)		
개인 부담비용	소계		
	요양급여비용(20%)		
	식사재료비/간식비	345,000원	일 11,500원x30일
	상급침실 이용료	200,000원	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**식사재료비**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**상급침실 이용료**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**이·미용비**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※ 회사 계획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인상 할 수도 있습니다. 이에 동의하고 확인합니다.

제4조 【 계약자 의무 】 ‘갑’ 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‘갑’ 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‘을’ 의 의무

1. ‘갑’ 의 건강관리 협조
2. ‘갑’ 의 신변이상을 ‘병’ 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‘갑’ 의 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‘병’ 의 의무

1. ‘갑’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‘갑’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‘갑’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 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6. ‘병’ 의 가족은 각각 생각이 달라 ‘갑’ 의 케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‘갑’ 의 안전과 ‘갑’ 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케어를 위해서 ‘병’ 과 입소계약을 한 후 부터는 ‘병’ 외 ‘갑’ 의 가족 누구도 어떠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‘을’ 에게 제기할 수 없으며 주계약자인 ‘병’ 을 통해서만 하기로 한다.

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‘갑’ 의 해지

1. ‘갑’ 과 ‘병’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 의 해지

1. ‘갑’ 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‘갑’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항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실이 아닌 사무실로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 해주시고 생활실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원을 모욕하거나, 소리를 지르거나, 폭언, 등을 할 경우에는 어르신인 쾌적한 환경과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 즉시 퇴소를 시킬 수 있다. 또한, 퇴소를 확정짓고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즉시 전달후에는 어르신을 1층 대기실로 모시고 보호자는 그 즉시부터 어르신을 케어하며 즉시 어르신을 모시고 퇴소를 이행하기로 한다. 또한 이후에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며 보호자본인이 감소하고 퇴소한다. 후보호자명: (서명)

- ## 제6조 【 퇴소 】

- ## 제7조 【 입소물품 】

- ① ‘갑’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‘을’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- ② ‘갑’이 소지한 입소물품(안경, 보청기, 틀니, 복지용품, 금품, 현금등)을 ‘갑’이 관리소홀하거나 ‘갑’의 개인별 특성 및 질환으로 분실하거나 훼손시켰을 때 ‘을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 (다만 직원이 고의적으로 입소물품을 훼손시켰을 때는 ‘을’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.)
- ③ 대한연세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단체복을 입을 것을 요청합니다.()
- ④ ‘갑’의 사진을 행사, 프로그램 활동 등 요양원의 홈페이지, 카페등에 ‘병’이 볼 수 있도록 올리는 것에 동의한다.()

- ① ‘갑’의 면회시간은 매일 10:00부터 18:00 까지로 한다. 면회시간은 1일 4시간이내로 한정한다.
- ② ‘병’은 외출·외박시 사전에 ‘을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외출시 ‘병’은 외출신청서를 작성 후 외출준비를 하며 필요 물품을 챙긴다. 간호사에게 ‘갑’의 상태를 체크받고 ‘갑’의 약과 ‘갑’의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외출하며 귀가시간은 규정된 시간을 지키도록 한다. ‘병’은 외출 2일 전에 외출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‘병’이 직접 내방하여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- ③ ‘을’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갑’이나 ‘병’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 중 ‘갑’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⑤ 환절기, 동절기 그리고 전염병 발병시기에는 ‘갑’의 외출·외박과 ‘병’을 포함한 가족의 면회를 제한함에 적극 협조한다.

- ① ‘을’은 보건, 위생, 방법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갑’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에게 별도 징수한다.
- ④ ‘을’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약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- ⑤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 ‘을’은 ‘갑’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 상시 지체없이 ‘병’에게 통보한다.
- ⑦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- ① ‘갑’은 ‘을’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‘갑’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‘을’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섭취 및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했을 때 ‘을’은 ‘병’에게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위험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‘을’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다.(‘갑’이 섭취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‘병’이 아무런 조치없이 지속해달라고 요구할 때

도 포함)

- ③ ‘갑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‘을’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단 ‘병’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‘을’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‘을’은 ‘갑’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‘병’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3조 【 임종 및 장례 】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-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병’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 2. 장례는 ‘병’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- ② 무연고자
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을’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 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 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 】

- ① ‘을’은 1일 3식 및 간식을 ‘갑’에게 제공하며, ‘갑’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
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‘을’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‘갑’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 【 영양실의 배정 】 ‘갑’의 방 호실 배정은 최초 상담기록지와 입소시

‘갑’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‘을’이 지정하고 입소하며
생활도중 ‘갑’의 상태 및 영양원등 어르신의 효율적인 케어를 위하여 ‘을’의
판단하에 방을 다시 배정하고 옮길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. ‘을’은
임의적으로 결정하고 방을 옮긴 후에 방의 호수는 ‘병’에게 연락하여 ‘병’의
면회시 혼돈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. ‘병’이 연락이 안 될 시에는
‘병’의 핸드폰 번호로 ‘갑’의 호수를 문자로 남기기로 한다.

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‘갑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으로 한다.
- ④ ‘갑’은 ‘을’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‘을’은 ‘갑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 【 배상책임 】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갑’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2. ‘을’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‘갑’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3. ‘갑’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4. ‘갑’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5. ‘갑’이 혼자서 배회하거나 혼자 낙상등이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
 6. ‘갑’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, 상해, 추락 등이 발생할 경우
 7. ‘갑’이 투약거부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등
 8. ‘갑’이 억제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억제대 사용을 허락한다.
 9. ‘갑’이 입소물품(안경, 보청기, 틀니, 복지용구, 금품, 현금등)을 입원 중 분실하거나 훼손시켰을 때

제19조 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제20조 【 협조 및 책임 】

- ① ‘갑’ 과 ‘병’ 은 사정상 ‘갑’ 이 전실이 필요할 경우 ‘병’ 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따른다.
 - ②건강보험공단 특례규정에 의하여 일시적(90일)간은 1실 5인이 될 수 있다.
 - ③ ‘갑’ 의 질병이 악화되어 ‘병’ 이 ‘을’ 에게 ‘갑’ 의 호스피스(임종)을 원할 경우 사전의료지시서 또는 계속 입소동의서를 ‘을’ 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‘을’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다만 호스피스실에서만 ‘갑’ 이 임종하도록 해야 한다.
 - ④ ‘갑’ 과 ‘병’ 은 호스피스과정을 요구할 경우 또는 사전의료지시서 또는 계속 입소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문제는 ‘병’ 이 책임지겠으며 ‘을’ 에게 민· 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.
 - ⑤ ‘갑’ 과 ‘을’ 의 입소 계약을 함에 있어 ‘을’ 과 ‘병’ 이 계약 체결 후 주계약자를 변경할 시에는 ‘을’ 과 ‘병’ 은 합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.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퇴실한다.
-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
20 년 월 일

(계약자)	‘갑’ 이용자	(인)
	‘을’ 대한연세요양원장	(인)
	‘병’ 대리인(보호자)	(인)